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
------	-----

2011. 6. 28.
재정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1년 4월 18일

나. 제안자 : 박진형 의원 외 11명

다. 회부일자 : 2011년 4월 18일

라. 상정일자 :

【서울특별시의회 제231회 정례회】 제2차 재정경제위원회(2011년 6월 28일) 상정,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집행부의 모든 재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된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함이 원칙임. 그러나 이체·이용·전용 등에 있어 재량과 탄력성의 여지가 크게 인정되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예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크다 할 것임.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이용·전용을 통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부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따른 투명한 집행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 따라서 집행부가 정치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큰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예탁을 삭제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나. 주요내용

-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에 일반회계를 삭제함.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 예산조치 :
-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3.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가. 개요

- 현행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은 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수금’으로 재원조성의 범위를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예탁’ 할 수 있도록 운용범위를 확대하였으나,

서울시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정치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성재원과 용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과 용도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예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나. 추진배경

- 지난 '09년 정부의 세제개편 및 세계경제불황 여파의 지속으로 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자예산 편성 등으로 세수부족분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 확대재정정책을 추진하였음.

이에, 한정된 재원 내에서 급증하는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재정투융자기금 재원의 용도 및 조성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제222회 정례회(2010.6.24)에서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운영 범위를 일반회계로까지 확대시킨 바 있음.

- 이와 같이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운영 범위를 일반회계로 까지 확대하여 내부재원이 탄력적으로 활용될 경우,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부족한 재정수요를 충당할 수 있는 재원조성 능력이 확보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 간에 이체·이용·전용 등 회계간의 혼용으로 인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이 결여될 뿐만 아니라,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있는 단점도 있음.
- 또한, 서울시의 부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집행부가 정치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조성 재원과 용도를 자의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매우 크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간에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다. 기금의 재원 및 용도에서 일반회계를 삭제(안 제2조)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생략 <u>1.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	제2조(기금의 재원) ① 생략 <u>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u>2.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예탁</u>	제3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 <u>2.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용자</u>

- 관계법령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3조는 총괄계정의 재원과 용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괄하는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전입할 수 있거나 예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경우 12개의 특별회계(도시철도건설, 교통, 주택, 도시개발, 하수도, 집단에너지, 의료급여기금, 한강수질개선, 광역교통개발, 재정비추진, 지역개발, 상수도 등)와 13개의 기금(재정투융자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식품진흥기금, 기후변화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사회복지기금, 체육진흥기금, 감채기금, 재난관리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대외협력기금)을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부재원의 통합관리 기능(일반·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도시기반시설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용자)을 하고 있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를 현행과 같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회계 간 혼용하였을 경우, 재정수지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이 명료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간에 복잡한 재정구조로 인한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하될 문제점이 있으므로,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조성 및 용도에서 일반회계를 삭제하여, 이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
 - 기획조정실장 답변 : 모든 회계는 일반회계로 충당해야하며 재정의 허수를 줄이고, 기금회계의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이해하나 집행부에서 보다 바람직한 안을 올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바람.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운용방법이 조금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 간결하게 통합관리기금 처럼 운용할 수는 없는지?
 - 기획조정실장 답변 : 재정의 칸막이를 없앤다는 점에서 일부 공감하나, 기금의 규모를 크게 증가시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현행체제의 장점도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5
----------	-----

발의년월일 : 2011년 4월 18일
발 의 자 : 박진형 의원 외 11명

1. 제안 이유

- 집행부의 모든 재정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 효력이 발생된 예산에 근거하여 지출함이 원칙임. 그러나 이체·이용·전용 등에 있어 재량과 탄력성의 여지가 크게 인정되는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을 일반회계 예수금으로 확대하고 기금의 용도를 일반회계 예탁으로 확대하는 것은 개별사업의 타당성과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감독하는 의회의 예산심사를 의도적으로 회피할 우려가 크다 할 것임. 특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의 이용·전용을 통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부채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예산의 사전의결원칙에 따른 투명한 집행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임. 따라서 집행부가 정치적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자의적으로 변경할 여지가 큰 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에 일반회계 예수금 및 예탁을 삭제하여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려 함.

2. 주요 골자

- 가. 재정투융자기금의 조성재원 및 용도에 일반회계를 삭제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나. 예산조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 중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으로 제3조1항 중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예탁”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융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금의 자원) ① 생략</p> <p><u>1.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p>	<p>제2조(기금의 자원) ① 생략</p> <p><u>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u></p>
<p>제3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p> <p><u>2. 일반·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예탁</u></p>	<p>제3조(기금의 용도) ① 생략</p> <p><u>2.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 용자</u></p>